## 문구생활산업전 - SISOFAIR

# SISOFAIR 2024

제36회 서울국제문구사무용품종합전시회 36th Seoul International Stationery & Office Fair

# 2024. 11. 13<sup>(수)</sup> ~ 16 <sup>(토)</sup> 코엑스 B Hall

주최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업체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웹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국문)						
	(영문)						
구분	신청내용			참가비 (부가세별도)			
기본부스 (27m² 이하)		(	)부스	2,30	2,300,000원 / 1부스 : 9m² (조합원 10% 할인)		
독립부스 (36m² 이상)		(	)부스	2,10	2,100,000원 / 1부스 : 9m² (조합원 10% 할인)		
전화설치		(	)대		50,000원 / (설치비 및 사용료포함)		
인터넷 전용선		(	)회선		200,000원 / (설치비 및 사용료포함)		
				800,000원 / 표4			
가이드북 광고		(	)면		500,000원 / 표2 및 대면		
70-4 01	(	(	) <u>L</u>		500,000원 / 표3 및 대면		
					300,000원 / 내지		
담당자(직위 및 성명):			oļı	이메일:			
직통전화:			<u>핸</u>	핸드폰:			
참가신청서 제출시 50% 납부				납부계좌 예금주 :		1.005 - 000 - 940039 당업협동조합	
※본 신청서는 참가업체 가이드북 원고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4 년	월	일	
참가기업명 :	대표자명:			(인)

# 문구생활산업전 - SISOFAIR

36th Seoul International Stationery & Office Fair

**코엑스** B Hall **2024. 11. 13**(今) ~ **16**(里)

#### 주최자

##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92(장충동 2 가) 문구회관 전화: (02)2278-7891~5 / 팩스: (02)2275 - 1065

#### e-mail: sisofair@ksic.co.kr

#### 제 1조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문구생활산업전(SISOFAIR)을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 2 조 (참가 신청 및 계약)

-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온라인신청.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의 50%인 참가 신청금을 주최자 의 지정계좌에 납입함으로서 전시 참가 청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 2. 참가비는 독립부스 2,100,000 원 / 1 부스, 기본부스 2,300,000 원 / 1 부스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참가비 전액을 납부 시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 3.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 신청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 부대시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상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3 조(부스배정)

- 1. 전시부스의 위치 배정은 참가신청 순서, 참가비 납입 순서, 부스규모, 전시품 순에 따라 주최자가 배정한다.
-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서 부스 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 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4 조 (전시실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시 참가 운영 및 전시 부스 관리에 신의와 성실로 임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 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는 판매 행위가 발견될 시 주관자는 즉시 전시의 중지, 전시품의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 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 부스 및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 등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객행위나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 는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6.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전시장의 원 상태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전시자로 인한 전시장의 손상이 있을 시, 시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주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5 조 (납입조건)

-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참가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 해야 하며, 잔금 은 2024 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 2. 참가비의 완납이 납입기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 신청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6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 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7 조 (참가 취소 및 위약금)

- 1. 전시자가 약정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2024. 09. 20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4. 09. 3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 8 조 (해지)

-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4 년 11월 12일(화) 오후 6 시까지 전시품 진열 또는 부스 참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전부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다.

####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후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에 따른 제비용(임차료,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보안, 위험 부담 등)

-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코엑스 전시 규정에 의거) 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 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1 조 (기타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코엑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2 조(분쟁해결)

본 참가약관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

#### 제 13 조(영상정보(사진 및 영상) 촬영 등에 대한 동의)

전시장 내에서 주최자가 전시회 행사의 기록 및 홍보를 위하여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 를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